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임기제)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업무분야 (3개 직위, 총 3명)

※ 담당예정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용예정직급	직위 코드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예정업무
전문임기제 나급	B	1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C	1명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규정 검토 및 제·개정 • 식·의약품 위해예방 및 위기관리 제도·규제 개선 등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D	1명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조사·분석 • 수출국 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 현황 조사·분석 등

2.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2021. 6. 25.)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상세내용은 [붙임 1~3] 직무기술서 참고

직급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 중 택 1)
전문임기제 나급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대한민국 의사 면허 소지자 ○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임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의학·수의학·약학·생명공학·생명과학·유전공학·미생물학·생물학 * 관련분야 경력 :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법률 제·개정, 법령 검토·자문·연구, 소송·심판 등 법무(송무) 관련 분야 ○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법학 또는 법률 계통 학문

직급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 중 택 1)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年)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 기사(6, 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경영·포장), 산업기사(9, 축산·식품·품질경영·포장), 위생사(8), 영양사(8) * 관련분야: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 ○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 ○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식품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등 식품 계통 학문

다.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

【 공통 】

- 직급별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예) '자격증',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중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1.6.25.)을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 2가지를 모두 갖춘 응시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특정 응시요건을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검토결과 해당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다른 응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부적격 처리됨

【 자격증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경력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및 **세부적인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 및 담당업무 등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학위' 또는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홈텍스) 제출
 - ④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홈텍스) 제출
- ※ 서류 확인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단체)의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학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응시자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학위-②', '학위-③'의 실무 경력 인정 범위는 상기 【 경력 】의 유의사항과 동일

< 우대요건 >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1.6.7.)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전형에서 어학성적으로 인정 가능한 시험은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 G-TELP'로서, 아래 표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응시자가 획득한 성적에 따라 차등 평정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를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 시험 실시일이 2019년 8월 1일 이후인 성적에 한하여 유효하며, 어학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SPEAKING, ~WRITING' 등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근무 기간 및 보수 수준

가. 근무기간

-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함
 - 전문임기제 : ~ '22. 4. 30. / 일반임기제 : ~ '22. 12. 31.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6,686천원	51,098천원
일반임기제 6호	72,560천원	36,558천원

* 상기 연봉액 이외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외 급여 지급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적격자는 전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기준 :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제외한 학위·자격증, 어학성적 등 직렬(직급)별 우대요건 및 가산점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목적 : 공직가치관 및 위기대응능력 사전 검증
 ·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면접시험 평정기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가. 원서접수 : 2021. 5. 31.(월) ~ 6. 7.(월) (공고 : '21. 5. 25. ~ 6. 7.)

- 접 수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인사관리팀 채용담당)
 - 주소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접수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6.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겹봉투에 ‘**식약처 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방문 접수 및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1만원, 일반임기제 7천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원서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6월 9일까지 응시번호 통보를 못 받은 응시자는 식약처로 전화하여 반드시 문의)
- 응시원서 서식은 공고문 붙임 서식에서 내려 받아 작성
 -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1. 6. 16.(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다. 온라인 인성검사(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 6. 19.(토)

라. 면접시험(예정) : 2021. 6. 25.(금)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해외귀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참고(면접일정 변경 불가))

마.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021. 7. 2.(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 근무 시작일은 2021년 7월 초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등(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해당자에 한함' 표시 없는 서류는 모든 응시자 제출 필수 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는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체크 및 서명하고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1만원, 일반임기제 7천원)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 ④ 자기소개서(A4 1매 이내 작성)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불합격,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⑤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작성)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불합격,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⑦ 학사 이후의 모든 졸업(학위)증명서 사본 1부
 * 석·박사 학위증명서에는 반드시 전공 기재 필요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 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 ⑧ 학위 관련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학위 응시자 필수
 * 세부전공(이수과목) 확인용으로 학위 응시자 전원 제출, 심사위원회에 제공 안 함
- ⑨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주당 근무시간 표시(예: 주00시간),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FAX번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상근경력(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주00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아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진위여부검증 단계에서 시간제 근무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 ⑩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자격증 응시자 필수, 그 외는 해당자에 한함
 * 분실 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단, 합격확인서는 불가)
- ⑪ 외국어(영어)능력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인정시험 :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 '19.8.1.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에 한함
- ⑫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만 유효함
- ⑬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 ※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국외 학위 및 근무(연구)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 ※ **국외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등 사본을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면접일에 지참**

8. 기타 유의사항

- 근무 시작일은 '21. 7월 초 예정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의 판단 및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리며, 사본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예정) : '21. 7. 3. ~ 7. 14.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결격사유 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시 연봉은 채용 이전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에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요건의 '근무경력'과 연봉 확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대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채용제도 : 운영지원과 인사관리팀 (☎ 043-719-1243)

붙임 1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전문임기제 나급 / B)

직위코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B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체제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체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추진력, 대인관계, 기술적 전문지식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체제 분야 제품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체제 분야 비임상 또는 임상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	---

응시자격요건 (택 1)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임상 및 허가심사															
	자격증	○ 대한민국 의사 면허 소지자														
경력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소지자 ②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소지자 ③ 6급 이상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소지자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소지자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소지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단,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제외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관련분야 학위(학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의사 면허 ○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TOEFL(iBT)</td> <td>TOEFL(PBT)</td> <td>TOEIC</td> <td>New TEPS</td> <td>FLEX</td> <td>G-TELP(Level2)</td> </tr> <tr> <td>기준 점수</td> <td>86점이상</td> <td>567점이상</td> <td>790점이상</td> <td>385점이상</td> <td>700점이상</td> <td>77점이상</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영어) 우수자는 위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19년 8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18.1.1.이후 실시된 성적) (2등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서류전형 만점의 3%)															

붙임 2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행정주사(일반임기제) / C)

직위코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C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규정의 검토 및 제·개정 ○ 식·의약품 관련 위해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규제 개선 등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사고력, 창의력 등
-------	---

필요 지식	○ 국가기관의 입법실무, 행정절차, 법령해석 등 관련 지식
-------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법무행정															
응 시 자 격 요 건 (택1)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법률 제·개정, 법령 검토·자문·연구, 소송·심판 등 법무(송무) 관련 분야														
	학위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법학 또는 법률 계통 학문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단,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제외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관련학과 학위(학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변호사 자격증 ○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영어), G-TELP(Level2) 소지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TOEFL(iBT)</th> <th>TOEFL(PBT)</th> <th>TOEIC</th> <th>New TEPS</th> <th>FLEX</th> <th>G-TELP(Level2)</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점수</td> <td>86점이상</td> <td>567점이상</td> <td>790점이상</td> <td>385점이상</td> <td>700점이상</td> <td>77점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영어) 우수자는 위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19년 8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18.1.1.이후 실시된 성적) (2등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서류전형 만점의 3%)														

붙임 3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식품위생주사(일반임기제) / D)

직위코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D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1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조사·분석 ○ 수출국 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 현황 조사·분석 등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 안전 관련규정 및 기준·규격에 대한 지식 ○ 식품 등 제조·위생 관련 분야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택1)	<p>※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p> <p>관련분야 : 식품 등 안전관리</p>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숫자에 해당 하는 기간(年)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술사(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 기사(6, 축산·식품·수산제조·품질경영·포장), 산업기사(9, 축산·식품·품질경영·포장), 위생사(8), 영양사(8) * 관련분야 :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 등 위생 관리체계 등 조사·분석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식품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등 식품 계통 학문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단,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은 제외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관련학과 학위(학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자격증(자격증별 차등 배점) ○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영어), G-TELP(Level2) 소지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TOEFL(iBT)</th> <th>TOEFL(PBT)</th> <th>TOEIC</th> <th>New TEPS</th> <th>FLEX</th> <th>G-TELP(Level2)</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점수</td> <td>86점이상</td> <td>567점이상</td> <td>790점이상</td> <td>385점이상</td> <td>700점이상</td> <td>77점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영어) 우수자는 위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19년 8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가산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18.1.1.이후 실시된 성적) (2등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서류전형 만점의 3%) 																

[별지 제1호]

제출서류 총괄표

직위코드	응시직급	응시자격요건	성 명
(예시) B	(예시) 전문임기제 나급	(예시) 경력-①	

▣ 제출서류목록(총괄표)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	필수	
2. 이력서	필수	
3. 자기소개서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6. 학위증명서 사본	필수	
7. 석사 이상 성적증명서 사본	해당자만 제출	
8.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해당자만 제출	
9. 면허(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10. 외국어(영어)성적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1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본)	남성만 제출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표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i>(예시)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i>	
응시자격		<i>(예시) 자격증</i>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i>(예시)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i>	
응시자격		<i>(예시) 자격증</i>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임기제 또는 일반임기제(행정, 식품위생) 기재
2. 응시자격 : 본인의 응시자격 선택 후 기재
* 자격증, 경력-①, ②, ③, 학위-①, ②, ③ 중 1개
3.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에서 전문임기제 1만원, 일반임기제 7천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이력서

가. 인적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예시) D	응시 자격요건	(예시) 경력-①	성명	
----------	---------	----------	-----------	------------	--------------	----	--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는 '다'의 우대요건에 작성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식품기사	0000.00.00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요약)
	(주)바른식품	2017.00.00~현재(00월 00일)		과장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요약 기재
	국민식품(주)	2015.00.00~2017.00.00(00월 00일)		연구원	
학위	전공(세부)	학위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식품공학	0000.00.00			○○석사

다.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으로 작성한 것 이외의 사항을 작성 후 공란은 삭제

* 경력은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근무경력 중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만 기재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	담당업무(요약)
	00식품(주)	16.00.00~21.00.00(00월00일)		과장	
	00식품연구소	12.00.00~15.00.00(00월00일)		연구원	
	00식품(주)	10.00.00~12.00.00(00월00일)		사원	
학위	전공(세부)	학위취득(예정)일	학위번호		학위 종류
	식품공학	0000.00.00			학사
	생명과학	0000.00.00			석사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증번호		자격검정기관
		0000.00.00			
영어 성적	응시일자	시험명	점수	영문성명	
	0000.00.00	TOEIC	750		

라. 가산요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삭제

한국사	시험일자	회차	등급	인증번호
	0000.00.00	00	3	00-000000

* 기재사항이 많더라도 반드시 1장으로 작성(줄 추가·삭제, 글자크기 조절 등 가능)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예정직급의 직위코드 기재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직위코드의 **응시자격요건 중 반드시 택 1**
- ④ **응시자격** : 해당하는 요건만 작성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021. 6. 25.)]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예) 식품기사 취득 후 6년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 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란에 식품기사 기입 후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란에 자격증 취득 이후 6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7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응시자격요건 중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분야에서 9년의 경력이 있을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5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하되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
-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근무경력 중 당시 소속기관(기업·단체 등)의 폐쇄(폐업 등)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담당업무가 포함된 서류) ②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폐업사실증명서 ①~④ 모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 * 서류 확인 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의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 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담당업무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되므로 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표시되어야 함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예) 응시분야 학위요건 중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응시분야 박사학위도 소지하였을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석사학위는 ‘나. 응시자격’의 학위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박사학위는 ‘다.우대요건’의 학위란에 기재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2021. 6. 7.)]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하되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
-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되므로 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표시되어야 함

【학위】 응시자격요건으로 기재한 것을 제외한 관련학과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 취득(예정)일·학위종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기재한 것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응시자격요건으로 기재한 것 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예: 한식조리기능사 등)

【영어성적】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인정 가능한 영어성적은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 G-TELP’
- 2019년 8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각 해당직급의 직무기술서 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응시자가

획득한 성적에 따라 차등 평정됨

-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를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영어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가능

⑥ **가산요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이어야 유효함

[별지 제4호]

자기소개서

직위코드	(예시) D	응시직급	(예시) 식품위생주사(일반임기제)	응시자격 요건	(예시) 경력-①	성명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 제5호]

직무수행계획서

직위코드	(예시) D	응시직급	(예시) 식품위생주사(일반임기제)	응시자격 요건	(예시) 경력-①	성명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신의 경험, 기관 및 임용예정직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전 및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일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3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및 합격일자,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 성적·국어능력시험·논문실적, 의사상자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법무부 국적과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u>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u>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u>자격증, 경력사항, 학위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 제한기간, 관보게제일, 처분청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 . . .

성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